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9 년 월 일

보 고 자

(인)

양 주 군 수 귀하

[3]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3. 8.

제출자 : 양 주 군 수

제정이유

양주군에서 처리한 민원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 (제2조)

-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5인이하

나. 심의대상 (제3조)

- 미해결 민원중 재검토 필요사안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 관련)
-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 고질민원, 장기계류 및 반복민원
- 기관장이 재심 필요사항 및 민원인이 재심요구 (필요성 인정시)

다. 회의소집 및 의결 (제4조)

- 소집 : 위원장이 소집

- 개의 및 의결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상 합의로 결정

라. 안건 심의 결정 효력 (제7조)

-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마. 참고인 진술 및 여비 수당지급 (제9조 및 제10조)

- 필요시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및 질문조치

- 여비 및 수당지급 :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에서 처리한 민원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국민 기대에 따르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안

2. 복합민원. 많은 사람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4.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
5. 기타 군수가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 제4조 (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시작하고, 토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민원 재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주요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 등 적부 판단
2.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4. 주요 정책사항 발굴 추진

제6조 (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의 보기에 따라서 처리한다.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여러방면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재심의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임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최대한 해결책 연구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등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참고인진술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재심의위원회심의조서

민원유형		접수		처리	
일시				기간	
민원인성명		주소			
출원요지					

재심의 사유 (요지)							
심의의견	심의일자 :			종합판정			
	심의위원	가	부	심의위원	가	부	

【4】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3. 25.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 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